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자회사로 소유하는 회사(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 회사에 한한다)
2. 금융기관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 회사에 한한다)

3.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4조(금융관계법령)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규모, 종업원 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외국에 소재하는 소속금융회사 중 외국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법 제20조의 적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이 경우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제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3. 소속금융회사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발생한 천재지변·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 및 적용 제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매년 7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7월 30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5)의 대부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하는 업무로 한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금융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조원을 말한다.

⑤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금융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회사

⑥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⑦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여수산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하고 다른 두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만을 영위하는 자에 한정한다), 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금융회사가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에 출자하여 해당 금융회사들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으로 보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외국 법령에 의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감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금융회사들의 자산 규모·비중 등을 고려할 때 여수산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조(자료 제출 요구 등)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현황
2.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지정 또는 해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소속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대표금융회사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해제신청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소속금융회사 중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인지 여부
2. 소속금융회사 중 자산 또는 자본총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인지 여부
3. 소속금융회사 중 소유·지배구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회사인지 여부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나.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절차

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및 방지방안

마.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원 인사교류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

2.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 및 역할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업무 수행을 위한 소속금융회사 간 역할 분담 및 정보·의사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 운영 및 독립성 확보방안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 및 운영
 2.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또는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 등에 따라 대표 금융회사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하는 사항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 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를 위한 방법 및 절차
 -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및 소속금융회사별로 부담할 수 있는 위험부담 한도 및 자본배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 라.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 마.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절차

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3.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역할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소속금융회사 간

역할분담 및 정보·의사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 운영

및 독립성 확보방안

라.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2.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

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또는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 등에 따라 대표

금융회사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중복자본”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속금융회사 간 출자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통합자기자본”이란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속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최소요구자본을 합산(제2호의 중복자본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은 제외한다)한 금액을 말한다.
5. “위험가산자본”이란 법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요구자본을 말한다.
6. “통합필요자본”이란 최소요구자본합계액과 위험가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자본적정성 비율”이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본적정성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0조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공시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주요 위험요인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공시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허위로 보고·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보고·공시한 경우에는 대표금융회사에 정정하여 보고·공시하거나 다시 보고·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①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유·지배구조의 안정성

2. 그 밖에 위험 관리실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자산 규모·비중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자산규모, 위험관리수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세부적인 평가항목·기준·등급 및 평가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이행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표금융회사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익배당의 제한

2. 부실자산의 처분

3.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9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수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보완 명령을 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제18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⑤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합자기자본을 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처분) ① 법 제25조제1항 별표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2. 해당 임직원이 의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인해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해당 임직원이 의무이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외국 법령에 위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4. 해당 임직원이 의무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소명한 경우
5. 해당 임직원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경우

제21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말한다.

제22조(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29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공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제18조·제21조에 따른 감독, 검사, 평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 등을 하기 위한 업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위한 업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에 부수하는 업무

②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소속금융회사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⑤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정하는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소속금융회사는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소속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⑩ 법 제2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치 등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정보제공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①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공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제18조·제21조에 따른 감독, 검사, 평가 등의 업무를 위

하여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 등을 하기 위한 업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위한 업무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전산자료 저장설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제24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적용 제외 신청의 접수 및 적용 제외 사유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토

2.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토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토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본적정성의 평가를 위한 검토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본적정성 감독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 관리실태 평가

8.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명령 여부 검토
10.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11. 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 중 문책경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로 한정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12.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터 다목에 따른 조치 요구,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요구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
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
보에 한정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터넷전문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업자

1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유지·관리,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요청자에 대
한 통보

14. 법 제28조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15.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 내용 보고의 접수

16.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정보고·공시, 재보고·공시 등의 요구

17.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서 접수, 제18조

제4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이행실적 보고 접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 또는 개인이 의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인해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개인이 의무이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외국 법령에 위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4. 해당 금융회사 또는 개인이 의무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소명한 경우
5. 해당 금융회사 또는 개인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그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 또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경우

- ②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독대상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대상	금액
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34조제1항 제1호	기관	6,000
		개인	3,000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34조제1항 제2호	기관	10,000
		개인	5,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4조제1항 제3호	기관	10,000
		개인	5,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
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4조제1항 제4호	기관	10,000
		개인	5,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

마.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법 제34조제1항 제5호	기관	6,000
바.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제6호	기관	2,000
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제7호	기관	2,000
아. 법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 제34조제1항 제8호	기관	10,000
		개인	2,000